

# 보험금 청구서 (재물/배상책임용)

## 1. 인적 사항 및 보상 안내받으실 분

보험종목		증권번호		청구번호	
계약자	성명/상호		주민(사업자)번호		휴대폰
	(계약자가 법인, 회사인 경우) 보험업무 담당자 성명 :			연락처 :	
피보험자	성명/상호		주민(사업자)번호		휴대폰
보상관련 안내 (피보험자)	※ 반드시 한가지는 선택(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에 V표)해 주시기 바랍니다. 문자메시지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<input type="checkbox"/> 팩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선(전화)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안내거부 <input type="checkbox"/> (e-mail, 팩스, 주소 중 선택 사항 기재 : _____)				

## 2. 사고 내용 및 손해내역 (해당 사고 유형에 V표시하십시오 재물 비상책임 기타 )

※ 재물 : 피보험자 가입한 재물에 피해 발생 / 비상책임 : 피보험자가 다른사람 재물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힘

추가 접수여부	※ 동일사고로 청구이력이 있는 경우 체크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<input type="checkbox"/>			추가 접수번호	
사고일시	20	년	월	일	사고장소
사고경위					
손해내역		피해자	※ 사고유형 배상책임의 경우 피해자 성명 연락처 기재 성명 : _____ 연락처 : _____		

※ 확인된 사고와 관련하여 당사에 정상 유지중인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모든 보험금을 검토하여 드립니다.  
 (일부 보험금 항목만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손해내역에 별도 기재 부탁드립니다.)

## 3. 보험금 수령 계좌

피보험자	은행		계좌번호		예금주	
타 입금처	구분	(해당 유형에 V표)	피해자 <input type="checkbox"/>	공업사 <input type="checkbox"/>	병원 <input type="checkbox"/>	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_____)
	은행		계좌번호		예금주	

### ※ 가지급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

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일의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  
 구체적인 청구방법은 담당 손해사정사나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4. 확인 사항

· 본인은 별지 1.의 “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”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(담당부서 및 연락처, 지급절차, 예상 심사기간, 지급기일 등)를 안내 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·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2.의 “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동의서”상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, 조회, 제공 및 민감정보·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※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, 조회 및 민감정보·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“업무수탁자”는 삼성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(삼성화재 자회사 및 간이심사제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지급 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) 및 청구 계약의 보험모집인(보험설계사·보험대리점 등)을 말합니다.

작성일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     작성자      피보험자의 (      )      (서명)

※ 보험사기(고의사고, 허위사고, 허위입원·진단·장해, 피해과장, 사고 후 보험가입 등)는 범죄이며,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 
 ※ 반드시 피보험자가 서명하시고, 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인 경우,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 부모가 공동 친권자인 경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중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.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접수하신 청구서류 일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
#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

##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### 1.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**수집·이용**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#### •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보험금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, 잔존물 대위, 구상업무 관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
- 금융거래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을 위한 금융거래신청, 자동이체 등 접수) 관련업무
- 계약 체결, 보험금 청구 등으로 고객이 제공한 개인(신용)정보의 최신성 유지

#### • 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정보(운전면허번호 포함)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), 계좌정보, 가족관계 증명서류
-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 [검·경 등 수사기관,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]

#### •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)

### 2.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**조회**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#### • 개인(신용)정보 조회목적

- 보험금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

#### •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

-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보 포함), **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**, 운전면허정보(운전면허번호 포함), 무면허 운전 여부 및 음주운전 여부 정보 조회(보험금 지급 및 사고정보는 과거 및 현재의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 내용을 포함함)  
 ※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의 조회는 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(ICIS)을 통한 개인(신용)정보 조회 등을 말합니다.
- 경찰청이 보유하는 교통사고조사기록(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)

- 조회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(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 기간
  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함)

### 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**제공**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#### •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(제3자)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
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해양부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관할 보건소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, 법원, 검찰, 국세청, 경찰청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 등
- 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국내·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 등
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[삼성화재 자회사 및 간이심사제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협력법인·보험사고 조사업체·손해사정업체, 의료기관(의사), 법무법인(변호사), 위탁 콜센터, 추심업체, 잔존물 매각업체, 손해보험협회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

#### •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- 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, 의료법, 국민건강보험법, 보험사기방지특별법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도로교통법(자동차보험에 한함)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
- 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, 재보험금 청구,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진료비 심사, 의료심사 및 자문, 구상 관련 업무(자동차보험에 한함)
  - ※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외국 소재 본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
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(손해사정 업무,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업무, 구상업무 등)
-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)

#### •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「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」의 정보내용(단,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)

#### • 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기간
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로 (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)
- 거래종료일 : 보험(대출)계약 만기, 해지, 취소,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, 각종 채권·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

#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

##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

청구서류가 접수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지급심사가 이루어 집니다.  
 보상담당자는 서류 접수된 이후에 정해지며 당사 홈페이지나 담당RC에게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· 우편 접수: (07995)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-3, 14층 장기보험접수팀

##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

-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, 병원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-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아래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.  
 (보험감독규정 9-16조: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)  
 ①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
 (단, 실손의료비 담보 단독 청구건의 경우 완화된 동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)  
 ②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- 손해사정사 선임이 필요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위탁(선임)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,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(선임)한 손해사정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## 의료심사

-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, 의무기록 등 제출하신 자료를 기초로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.
- 의료심사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,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합니다.

##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(비례보상 적용)

-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.
-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

-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청구시 선택하신 방법으로 지급금액이 안내됩니다.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급금 안내시 통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인터넷 조회 서비스 안내

- 전자금융거래 회원에 가입하시면 (www.samsungfire.com)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, 증권 재발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##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

-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하며, 부지급 결정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 소보운영파트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접수 : 홈페이지 내 전자원원창구 / 전화상담 : 1588-5114 (질병 및 상해 사고접수 /ARS 착신 후 5번을 누르십시오.)
- 우편 : (우06620)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, B동 삼성화재 3층 소보운영파트

## 예상 지급기일

- 상해·질병사고는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, 재물·배상책임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, 이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## 지급심사 지연안내 및 지연이자 지급

- 약관상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,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 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.

## 손해사정사 교부 안내

-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, 그 손해사정서는 보험업법 따라 계약자, 피보험자, 청구권자(수익자)에게 교부됩니다.

##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

-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.

## 보상 담당부서 연락처

- 당사 콜센터(TEL"1588-5114")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진료비확인신청제도

-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해주는 권리 구제제도입니다.
- 진료비 확인요청 범위: 급여진료비 중 '전액본인부담' / 비급여진료비 중 '선택진료료', '선택진료외의' 항목의 비용
- 진료비 확인방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, 모바일 앱, 우편, 팩스, 방문상담 가능(문의전화:1644-2000)